

예 산 총 칙

2019년도

제 1 조 2019년도 세입·세출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회 계 별	세입 · 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계	614,100,000	18,423,000
일 반 회 계	603,800,000	18,114,000
일 반 회 계	603,800,000	18,114,000
특 별 회 계	10,300,000	309,000
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기금특별회계	575,000	17,250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1,042,000	31,260
지하수관리특별회계	849,000	25,470
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 특별회계	2,148,000	64,440
기반시설사업특별회계	35,000	1,050
주차장특별회계	5,651,000	169,530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예산 사업명세서"와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,518,089천원으로 한다.

(일반예비비 5,018,089천원, 목적예비비 500,000천원)

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 한도액은 3,5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.